

한국통계학회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14 4층(서초동, 디앤에이빌딩) ☎06633
E-mail : office@kss.or.kr 홈페이지 : http://www.kss.or.kr
TEL (02)567-2859, 3453-7362 FAX (02)564-7285

(사)한국통계학회 회원 여러분께;

1. 우리 학회 정관운영세칙 제2장(회장 선거, 별첨)에 의하여 2026년 5월 11일에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다음과 같이 5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

위 원 : 김경희(고려대), 선호근(부산대), 정재식(전남대), 전용호(연세대, 당연직)

2. 본 선관위에서는 아래 일정으로 제31대 (사)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 선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내용
6.2(화)	평의원(61명)에게 회장 후보 추천서를 우편으로 발송
7.8(수)	7.8(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평의원이 회장 후보 추천서 마감
7.28(화)	(회장 후보가 복수일 경우) 회장 선거 후보자를 공고
8.4(화)	선거권이 있는 회원(해외거주 회원 포함)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발송
9.23(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회원 투표 마감
12월	동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거 결과 보고

3. 평의원을 포함한 회원 여러분께서는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개인 정보를 최근 것으로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께서는 6월 2일(화)에 회장 후보 추천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만큼 5월 31일(일)까지는 개인 정보를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원께서는 7월 21일(화)까지 갱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갱신 절차 : 학회 홈페이지(<http://www.kss.or.kr/>) 접속 -> 우측 상단 또는 중간 "LOGIN" 에서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 우측 상단 또는 중간 "마이페이지" 클릭 -> 좌측하단 "회원 정보 수정" 클릭 후 수정 -> 하단의 "저장" 클릭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이디 찾기 : 학회홈페이지 아이디(이메일) 찾기를 통해 찾기

비밀번호 찾기 : 학회홈페이지 비밀번호 재설정을 통해 변경

별첨 : (사)한국통계학회 정관 운영세칙 제2장 회장 선거. 끝.

2026. 05. 18

(사)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관리위원장 배상.

(사)한국통계학회 회장선거관련 규정

사단 법인 한국통계학회 정관 운영세칙

제 2 장 회 장 선 거

제6조(회장 선출의 절차)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선출한다.

1. 정관운영세칙 제8조에 규정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평의원이 회장 후보 1명씩 을 추천하도록 한다.
2.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위 1항의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 중에서 후보를 수락한 자를 회장 입후보자로 정한다. 상위득표순 3위까지의 득표자 중에 후보를 수락한 자가 없을 경우, 평의원들의 추천을 다시 받는다.
3. 회장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한다. 회장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원들의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통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7조(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자가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직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10년간 회비를 회장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한 자가 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장선거관리위원회) 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로 칭함)를 구성한다.

1. 선관위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총무 이사 제외)은 정관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의원회가 선출한다.
2. 선관위의 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평의원회가 선임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이 있는 해 7월31일까지 구성되어야 한다.
4. 선관위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선관위의 기능) 선관위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결정과 공고에 관한 사항
2. 투개표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관위의 해산) 선관위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